

의안번호	2210090
의 퇴 인	김민석 의원
회 답 일	2025. 4. 22.
추 계 번호	25C2280
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5조(긴급지원 대상자)	이 법에서 정의하는 “위기상황”에 처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을 긴급지원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9조(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)	긴급지원의 종류 중 의료지원에 의료비 지원을 추가 ※ 현행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만 포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긴급지원 대상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9조(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)	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현재 긴급지원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중 소득(기준중위소득 75% 이하)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
 - －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
 - －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- －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
-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: 소득활동 미미(가구원 간호·간병·양육), 기초수급 중지·미결정, 수도·가스 중단, 사회보험료·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¹⁾

□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선정될 대상 가구 수와 지원할 의료비 단가 등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-
- 1)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
 ② 단전된 경우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
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
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·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·군·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
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
 ⑥ 자살한 자의 유족,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,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
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